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77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구자근·강승규·이만희

인요한 · 김선교 · 박덕흠

김성원 · 강대식 · 최수진

박준태 · 김도읍 · 신동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65條(被告人의 出廷) ① (생	第365條(被告人의 出廷)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被告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定한 期日에 出廷하지 아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니한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	열린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
<u>이 判決을 할 수 있다.</u>	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
	이 판결을 할 수 있다.